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2일, 양부남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4.) 상정, 축조심사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양부남 의원)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해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총체적·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 중장기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행정

안전부 장관이 동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②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며, ③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9조).

현 행	개 정 안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후 단 신설>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_____ _____ ----- <u>.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u>공개</u> 하여야 한다.	③ ----- <u>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u> ----- -----.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 ----- ----- -----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통계 작성시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국세의 경우에는 현재 국세통계센터 및 국세통계시스템을 통

해 국세통계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통계자료가 국세통계정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방세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와 지방세의 통계정보 관리 체계 비교]

구 분		국 세	지방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통계 공개	매월	지방세 징수실적, 14개 업태 현황 등	없음
	매분기	세무조사 현황,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등	없음
	매년	국세통계연보	지방세통계연감
	통계포털	국세통계포털(TASIS) (‘21.4월 개통)	없음
데이터 관리 조직		2개과 9개팀 총 53명 ※ 국세데이터담당관(4개팀, 15명) 국세청 빅데이터센터(5개팀, 38명)	지방세정책과 내 1명
데이터 관리 예산		‘25년 약 18억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없음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개정안과 같이 지방세통계센터가 설치되고, 지방세통계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를 통해 생산하는 지방세통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국세통계센터의 경우는 국세통계정보를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 등에게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 등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¹⁾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⑧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 제7항에 따라 제공된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⑩ 제4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의 제공 절차 등

을 통해 국세통계자료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운영의 투명성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신설, 인력 충원 및 관련 예산 확보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